



숙박업소의 고객 목록에 대한 영업비밀성 여부를 판단한 사건의 항소심 사건

27

Dicks v. Jensen, 768 A.2d 1279 (2001)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버몬트 주 (Vermont) 대법원	사건번호	00-102
판결 일자	2001.02.09	판결 결과	전부 기각
원고 (피항소인)	제임스 딕스 (James Dicks), 콘도텔 프로퍼티즈 (Condotel Properties, Inc.)		
피고 (항소인)	케리 젠슨 (Cary Jensen), 브렌다 젠슨 (Brenda Jensen)		
참조 법령	버몬트주 영업비밀법, 9 V.S.A. §§ 4601-4609 ¹⁾		
참조 판례	American Credit Indem. Co. v. Sacks, 213 Cal.App.3d 622, 262 Cal.Rptr. 92, 97 (1989); Hollingsworth 1283*1283 Solderless Terminal Co. v. Turley, 622 F.2d 1324,1333 (9th Cir. 1980); Stampede Tool Warehouse, Inc. v. May, 272 Ill.App.3d 580, 209 Ill.Dec. 281, 651 N.E.2d 209 (1995), and Unistar Corp. v. Child, 415 So.2d 733 (Fla.Dist.Ct.App.1982)		
영업비밀	숙박업소의 고객 목록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고객 목록, 획득 가능성		

02 사건 개요

원고는 1971년부터 ‘마운트 스노우’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였는데 겨울이 아닌 계절에 노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버스 관광이 주 사업이다. 버스 관광 사업은 경쟁이 심한 사업으로서 여러 호텔 소유주들이 단체 관광객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호객행위를 한다.

피고들은 1991년 고용계약 없이 원고의 숙박업소에서 버스 관광 조직 및 광고 업무를 수

1) 원문

행하였고, 주로 이메일 발송과 전화를 통하여 호객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숙박업소를 그만 두고 자신들의 숙박업소를 개장하면서, 원고의 고객들에게 자신들이 원고의 숙박업소를 떠났음을 알렸고, 원고 숙박업소의 정기 버스 관광 고객들에게 호객행위를 하였다. 그 결과 첫 관광기관에 피고들이 받은 예약 11건 중 9건이 원고의 기존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피고와 재계약한 고객들이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숙박업소 고객 목록을 부정취득하여 영업비밀법을 위반했고, 원고의 고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함으로써 충실의무와 신의칙 위반 및 영업관계 불법개입을 하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 고



피 고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고객 확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며 피고들이 원고의 고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함으로써 이를 절약했다.

고객 명단은 모두 공개된 문서에 포함되었으므로 충분히 획득 가능한 것이었다.

영업비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의 고객들에게 호객행위를 해서 안 되는 판례법상의 의무가 있다.

04 판결 요지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에 따라 다르고, 충분히 획득 가능하다는 명백한 판단 기준이 없으며, 획득 가능성에 대한 사실 판단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숙박업소의 고객 목록이 영업비밀이 아니었다는 법률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원심의 약식재판 결정에는 오류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고객 목록이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알리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비밀유지를 위한 약정을 체결한 바가 없으며, 접근 제한을 위한 절차나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관광 단체들의 이름은 모든 종업원과 사무실 방문객들이 볼 수 있는 대형 예약 판에 게시되어 있었고, 고객 이름들은 별도로 보관되지 않아서 모든 종업원이 접근 가능했다. 원고가 고객 목록의 비밀성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고객 목록이 영업비밀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약식재산 결정은 유지한다.

원고의 관례법상 의무 주장은 영업비밀법 제4607조²⁾에서 타 법과 모순될 경우 영업비밀법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유 없다.

05 Key Point

영업비밀에는 기술상의 정보뿐만 아니라 고객 정보, 거래처 정보 등 경영상의 정보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고객 명단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영업비밀이라고, 혹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영업비밀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관련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2) § 4607. Effect on other law

(a)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this chapter displaces conflicting tort, restitutionary, and any other law of this state providing civil remedies for misappropriation of a trade secret.

(b) This chapter does not affect:

(1) contractual remedies, whether or not based upon misappropriation of a trade secret;
(2) other civil remedies that are not based upon misappropriation of a trade secret; or
(3) criminal remedies, whether or not based upon misappropriation of a trade secret. (Added 1995, No. 90 (Adj. Sess.), § 1.)